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환경제규제특례지역 지정〉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06호)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29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1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등	6
(1) 개정안 취지, 주요내용 및 개정방식	15
(2) 정의	22
(3) 특례구역 지정	23
(4) 특례구역 신청자격	24
(5) 특례구역 지정해제	25
(6) 규제특례 적용	26
(7)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의견	28
2.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원 조직 등	30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35
(2)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38
3.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사후관리 및 제재 근거 마련	41
(1) 특례구역 사후관리	43
(2) 과태료	45

[의안번호 2217506호]

I. 제안경위

2026년 3월 16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의안번호 2217629호]

I. 제안경위

2026년 3월 19일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 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에 의한 해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제도, 위해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4).
- 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 마.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39조 및 제41조).
- 바. 특례 적용 사업장을 보고·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신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

[의안번호 2218618호]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4일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

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등

개정안은 ①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 부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② 특례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며, ③ 특례구역 내에서 사전 신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	9.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	9.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자원(資源)의 순환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소화하고 순환</u> <u>이용을 촉진하</u> <u>기 위하여 기</u> <u>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이 제36</u> <u>조에 따라 지</u> <u>정한 구역을</u> <u>말한다.</u>	<u>소화하고 순환</u> <u>이용을 촉진하</u> <u>기 위하여 기</u> <u>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이 제35</u> <u>조의2에 따라</u> <u>지정한 구역을</u> <u>말한다.</u>	<u>이용을 촉진하</u> <u>기 위하여 기</u> <u>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이 제30</u> <u>조의2에 따라</u> <u>지정한 구역을</u> <u>말한다.</u>
<신설>	10. “산업단지” <u>란 「산업입</u> <u>지 및 개발에</u> <u>관한 법률」</u> <u>제2조제8호가</u> <u>목부터 라목</u> <u>까지에 따른</u> <u>산업단지를</u> <u>말한다.</u>	10. “산업단지” <u>란 「산업입</u> <u>지 및 개발에</u> <u>관한 법률」</u> <u>제2조제8호가</u> <u>목부터 라목</u> <u>까지에 따른</u> <u>산업단지를</u> <u>말한다.</u>	10. “산업단지” <u>란 「산업입</u> <u>지 및 개발에</u> <u>관한 법률」</u> <u>제2조제8호가</u> <u>목부터 라목</u> <u>까지에 따른</u> <u>산업단지를</u> <u>말한다.</u>
<신설>	11. “부산물”이 <u>란 「자원의</u> <u>절약과 재활</u> <u>용촉진에 관</u> <u>한 법률」 제</u> <u>2 조 제 3 호 에</u> <u>따른 물건을</u> <u>말한다.</u>	11. “부산물”이 <u>란 「자원의</u> <u>절약과 재활</u> <u>용촉진에 관</u> <u>한 법률」 제</u> <u>2 조 제 3 호 에</u> <u>따른 물건을</u> <u>말한다.</u>	11. “부산물”이 <u>란 「자원의</u> <u>절약과 재활</u> <u>용촉진에 관</u> <u>한 법률」 제</u> <u>2 조 제 3 호 에</u> <u>따른 물건을</u> <u>말한다.</u>
<신설>	제36조(순환경제 <u>규제특례구역의</u> <u>지정 등) ① 기</u> <u>후에너지환경부</u> <u>장관은 다음 각</u>	제35조의2(순환경 <u>제규제특례구역의</u> <u>지정 등) ① 기</u> <u>후에너지환경부</u> <u>장관은 다음 각</u>	제30조의2(순환경 <u>제규제특례구역의</u> <u>지정 등) ① 기</u> <u>후에너지환경부</u> <u>장관은 다음 각</u>

현	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산업단지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u> 2.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대상이 도로, 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u> 2.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u> 2. <u>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u>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u> ② <u>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u>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u>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u>	<u>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u> ②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u>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u>	<u>입주 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u> ②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절차, 지정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신설>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7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1. <u>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2. <u>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 규제특례</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5조의3(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1. <u>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2. <u>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구역 신</u>	<u>제30조의3(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1. <u>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2. <u>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u>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신설>	<u>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u>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 내의 사업	<u>청자가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u>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4(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 내의 사업	<u>레구역 신청자가 지정의 해제를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u>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순환경제 규제특레구역 내의 산업단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 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u> 1. <u>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부산물을 배출,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2. <u>동일한 순환</u>	<u>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u> 1. <u>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u> 2. <u>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u> 3. <u>동일한 순환</u>	<u>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u> 1. <u>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u> 2. <u>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u> 3. <u>동일한 순환</u>

현	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경제 규제특례 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할 것</u> 3. <u>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u>	<u>경제 규제특례 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하는 경우</u> 4. <u>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나 민원</u>	<u>경제 규제특례 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하는 경우</u> 4. <u>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u>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매년 부산물의 배출 실적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부산물의 순환 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에 위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 환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부산물의 순환 이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에 위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이용의 중 지 또는 그 밖 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1) 개정안 취지, 주요내용 및 개정방식

‘폐기물¹⁾’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²⁾되는데, ‘사업장폐기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물'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이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³⁾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⁴⁾하여야 함.

특히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과 계량값, 위치 및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입력⁵⁾하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전 과정 추적 규제를 준수해야 함.

한편, 2024년 기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⁶⁾ 3,642개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총 5,838만 톤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제철업(47.7%), 화력 발전업(14.1%), 제강업(2.7%) 순으로 다량 배출되고 있음.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업종]

구분	전체	제철	화력발전	제강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배출량(만톤)	5,838	2,786	826	160	140	122
비율(%)	100	47.7	14.1	2.7	2.4	2.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약 62%(2,260개소)가 산업단지⁷⁾에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4,348만톤 규모로 전체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 폐기물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개별 산업단지별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철 및 제강업 등이 집중된 광양국가(1,277만톤), 포항국가(807만톤), 현대제철일반(766만톤)과 온산국가(210만톤), 군산일반(104만톤) 등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출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산업단지(개별)]

(단위: 만톤, 개사, %)

구분	전체	광양국가	포항국가	현대제철일반	온산국가	군산일반
배출량	4,348	1,277	807	766	210	104
배출기업	2,260	13	6	2	57	20
배출비율	100%	29.3%	18.5%	17.6%	4.8%	2.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전국 1,330개 산업단지 중 성과관리사업장이 소재한 470개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국가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의 배출량이 65.6%(2,856만 톤)를 차지할 만큼 특정 산업단지에 대한 집적도가

-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매우 높은 실정임.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산업단지(유형별)]

(단위: 만톤, 개사, %)

구분	전체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	도시첨단
산단수	470	40	304	125	1
성과관리 사업장수	2,260	875	1,215	169	1
성과관리 사업장 배출량	4,348	2,855	1,444	49	0
배출비율	100	65.6	33.2	1.1	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대규모 폐기물이 산업단지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순환이용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특히 폐기물을 외부 이동 없이 내부에서 순환이용하여 원료로 재사용하는 경우, 이동 과정이 수반되지 않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현행법상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⁹⁾’가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존재하나, 이는 개별 물질이나 단일 사업자 중심으로만 협소하게 운영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구역 내 발생 폐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사전 신고 등 일정 요건 하에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모두 제도의 기본 틀과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서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특례구역 지정 시 구역 설정의 유연성, 특례구역 신청 자격의 법률 명시, 환경 위해 우려 시 사후 조치 권한의 규정, 사전 신고의 수리 기한에서 차이가 있음.

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용어 정의	① 순환경제규제특레구역 ② 산업단지 ③ 부산물		
특레구역 지정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①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②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
	※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하천 등으로 분할 시 하나의 구역 지정 가능		
특레구역 신청자격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②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대통령령 위임
특레구역 지정해제	① 지정 시 기준 미충족 ② 신청자가 해제 신청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규제특레 적용	절차와 기준 충족시 특레구역 내 사업장의 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① 부산물 배출·순환이용 전 부산물 종류, 순환이용 방법, 위·수탁 업체 정보 등 사전 신고 ② 기존 신고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 이행 ③ 동일한 특레구역 내에서의 순환이용 ④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을 것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 충족		
순환이용 중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순환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신고 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다음으로,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은 현행조항을 이동하여 조문을 신설¹⁰⁾하는 방식이고, 박균택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은 가지번호¹¹⁾를 사용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임.

현행법은 2022년 12월 전부개정(2024. 1. 1. 시행)되어 8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은 4개임.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조문을 이동시켜 번호를 일제히 변경하기 보다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정의

세 개정안은 모두 ①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② 산업단지, ③ 부산물¹²⁾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동일하게 신설하고 있음.

이는 신설되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산물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타당한 입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121 참조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신설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124 참조

- 끌어 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하거나, 끌어 올리거나 내릴 조문이 그 법률 중의 다른 조나 다른 법률 중에서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의 조·호를 사용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법조치로 판단됨.

(3) 특례구역 지정

세 개정안은 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역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시설이 있거나, 관련 입주 수요 확보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요건은 같음.

다만,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은 단서에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해 부지가 분할된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항국가·일반산업단지(877만톤), 현대제철 및 송악일반산업단지(766만톤),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353만톤), 군산 국가·일반 및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35만톤) 등 대규모 부산물이 발생하는 거점 산업단지 대다수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행정적 경계를 사이에 두고 각각 별개의 산업단지로 지정·구분되어 있음.

[도로·하천 등을 경계로 두고 있는 산업단지 예시]



포항 국가, 포항 3·4일반



울산·미포 국가, 온산 국가



군산 국가·일반, 새만금 국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의 단서는 단일 산업단지 내에서 매칭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부산물을 인접한 산업단지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점 산업단지 전반의 자원순환을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특례구역 신청자격

특례구역 지정 신청자격에 대해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13)에 따른 관리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관, 「폐기물관리법」 제17조¹⁴⁾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 순환이용자)로 규정한 반면, 김성원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신청자격은 규제 완화 대상을 확정하여 제도의 실제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는 제도 운영의 핵심요건에 해당하므로 제도 참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5) 특례구역 지정해제

세 개정안은 특례구역 지정해제 사유로 ① 지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자의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1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는 규제 특례제도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청자의 해제 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6) 규제특례 적용

세 개정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요건은 ① 배출·순환이용 전 부산물 종류, 순환이용 방법, 위·수탁 업체 정보 등의 사전 신고, ② 신고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이행, ③ 동일 특례구역 내에서의 순환이용, ④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을 것 등임.

또한, 사전 신고를 마친 자로 하여금 매년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 신고, 구역 내 제한, 위해성 검증 및 사후 실적 제출 등의 조치는 특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세 개정안은 사전 신고의 수리 기한 및 환경 위해 발생 시 행정청의 사후 조치 권한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먼저, 사전 신고의 수리 기한과 관련하여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은 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하고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간주 규정을 둔 반면, 김성원의원안은 이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처리 기한에 차이가 있음.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종류·발생량 신고¹⁵⁾,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¹⁶⁾,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¹⁷⁾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유사 신고 절차가 20일의 수리 기한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 기한을 20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폐기물 규제 체계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의 행정 절차상 대기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구역 내 순환이용 대상 부산물의 유해성 여부 및 인근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활용 공정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20일은 다소 촉박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제도 간 일관성 및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기본 수리 기한은 20일로 규정하되, 기술적·과학적 검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박균택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환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제 완화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7)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의견

개정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경상북도 김천시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부 이동없이 산업단지, 사업장 등 닫힌 공간에서 부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구역 지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①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및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② 폐기물 추적·관리의 공백 및 불법폐기물 발생 시 대책 미비, ③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영업권 침해 및 재활용 시장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임.

경상북도 김천시는 ① 현행법상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이미 존재하므로, 특정 구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동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별로 법 적용이 달라져 행정적 혼선이 우려되며, ② 열분해 등 엄격한 허가 및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행정 관리가 불가능해져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2.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원 조직 등

개정안은 ① 특례구역 운영 및 실무를 지원하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거나(김주영의원 및 박균택의원안), 특례구역 지정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김성원의원안),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관리·제공 범위에 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순환이용 현황 등을 추가하며(김주영의원 및 박균택의원안), ③ 특례구역 내 지정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주영의원 및 박균택의원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신 설>	제39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 원센터의 지정 · 운영) ① 기 후 에너지 환경부 장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순 환경제 규제특 례구역지원센터 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	제35조의5(순환경 제규제특례구역 지원센터의 지 정· 운영) ① 기 후 에너지 환경부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제특 례구역지원센터 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규제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제특례구역 제</u> <u>도발전을 위한</u> <u>조사·연구</u> 2. <u>제36조에 따</u> <u>른 순환경제</u> <u>규제특례구역</u> <u>지정 및 관리</u> <u>지원</u> 3. <u>제38조에 따</u> <u>른 순환경제</u> <u>규제특례구역</u> <u>내 특례 신고</u> <u>사업장 관리</u> 4. <u>그 밖에 기후</u> <u>에너지환경부</u> <u>장관이 정하는</u> <u>업무</u> ② <u>제1항에 따른</u> <u>순환경제 규제특</u> <u>례구역지원센터</u> <u>의 지정·운영</u> <u>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기후에너지</u>	<u>특례구역 관련</u> <u>제도의 발전을</u> <u>위한 조사·연구</u> 2. <u>제35조의2에 따</u> <u>른 순환경제규</u> <u>제특례구역 지</u> <u>정 및 관리 지</u> <u>원</u> 3. <u>제35조의4에</u> <u>따른 순환경제</u> <u>규제특례구역</u> <u>내 특례 신고</u> <u>사업장 관리</u> 4. <u>순환경제규제</u> <u>특례구역 내</u> <u>부산물의 배출</u> <u>및 순환이용</u> <u>현황에 관한</u> <u>정보의 수집·</u> <u>관리</u> 5. <u>그 밖에 기후</u> <u>에너지환경부</u> <u>장관이 정하는</u> <u>업무</u> ② <u>순환경제규</u> <u>제특례구역지원</u> <u>센터의 지정·</u> <u>운영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기후</u> <u>에너지환경부장</u>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신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5(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이하 “순환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규제특구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사항 5. <u>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u> 6.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순환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3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레구역 내 사업자, 제48조----- ----- ----- ----- ----- -----.	제규제특레구역 내 사업자, 제44조----- ----- ----- ----- ----- -----.	

(1) 순환경제규제특레구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먼저,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의 순환경제규제특레구역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업무는 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특레구역의 지정 및 관리 지원, ③ 규제특레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박균택의원안은 특레구역 내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음.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①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②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추진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¹⁸⁾하고 있음.

18)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핵심 업무인 ‘규제특례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추진센터가 수행 중인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지도’ 업무와 대상 및 기능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중복될 소지가 있음.

특례구역 내에서 완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부산물 역시 본질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체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감독 기구가 이원화될 경우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행정부는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유관 전문기관 내의 조직을 확충·재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기조¹⁹⁾를 명확히 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현장 지도·점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존 추진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재조정하여 신설되는 지원센터의 업무까지 함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9) 세계일보, ‘공공기관 통폐합’ 시사한 이 대통령... 청년 정책만은 “기관·부서 신설 검토하라”, 2026. 4.17.

다음으로, 김주영의원안과 박균택의원안은 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함)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임.

정보센터²⁰⁾는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순환 종합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2016년 설치된 이후 ‘유통 및 거래정보시스템’, ‘폐자원 전용 입찰·계약 정보처리장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전자보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업무 범위에 ‘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특례구역 내 자원유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특례구역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초기 규제특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하고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례구역 내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신고 내역 확인, 사업장 관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김성원의원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이하 “규제특구위원회”라 함)를 두려는 것임.

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① 특례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② 특례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③ 특례구역 계획, ④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 ⑤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 ⑥ 특례구역 운영의 평가 등임.

한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²¹⁾와 임시허가²²⁾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²³⁾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신기술·서비스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특례를 심의하는 반면, 신설하려는 규제특구위원회는 특정 산업단지 등 공간 중심의 정책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정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와 규제특구위원회는 모두 순환경제 분야에서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고 예외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합의제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과 제도적 기능이 유사함.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²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기능적 유사성과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초 측면을 고려할 때, 독립된 규제특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심의위원회로

2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임시허가) 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2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안부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2026. 3. 25.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례구역의 지정·해제, 특례 부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임.

3.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사후관리 및 제재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특례구역 내 신고를 마친 자를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② 특례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주영의원 및 박균택의원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김주영의원안	박균택의원안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 례구역 내 신고한 자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의4제1항제1 호·제2호에 따른 순 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신고한 자
7. (생략) ②·③ (생략)	8.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청문) ----- ----- ----- -----.	제46조(청문) ----- ----- ----- -----.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 역의 지정 해제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의3제1항에 따 른 순환경제 규제특례 구역의 지정 해제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현행 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의4제4항에 따 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② · ③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경부장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을 규정²⁵⁾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 품질인증, 인증기관의 지정, 규제 특례의 적용, 임시허가를 각각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²⁶⁾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은 특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2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

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2) 과태료

현행법의 과태료 체계는 ① 책임보험 미가입, 규제특례·임시허가 취소 후의 영업 행위 등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를, ②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자료 미제출, 보고 불이행·검사 거부 등 지도·감독 비협조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를 부과²⁷⁾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두 개정안은 모두 실적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나, 김주영의원안은 100만원 이하를, 박균택의원안은 1천만원 이하를 각각 부과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해당 위반 행위는 ‘보고 및 자료 제출 불이행’ 등 단순 지도·감독 비협조 행위와 그 법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적정성 및 현행 과태료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김주영의원안과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